

제40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5월24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5)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4)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송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30)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9)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2)

상정된 안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 1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5) 2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4) 2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송기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30) 2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9) 2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5) 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0) 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2) 2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김교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등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5)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4)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송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청원번호 2100130)
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9)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185)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060)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72)

○소위원장 김교홍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한창섭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관련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주제별로 끊어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안과 송기헌 의원 소개 청원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023년 6월 11일 강원자치도의 출범에 앞서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강원자치도의 비전 달성에 필요한 국가사무의 이양 근거와 각종 규제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총 25개 조항이 개정안에 의하면 137개 조항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구조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편 총칙과 그리고 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그리고 4편의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그리고 5편의 보칙, 6편의 별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청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창호 진술인의 경우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강원자치도의 비전 실현, 낙후된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서 규제완화 등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김범수 분권연구실장의 진술은 전부개정안은 분권을 통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한다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강원도의 청정자원을 국민 여가 외에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 요지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대한 특례 부여 시 중앙정부의 권한 형해화 우려가 있으므로 맞춤형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실질적 지방분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분권이며 행정특례는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례 부여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6월 11일 출범에 맞추어 거꾸로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출범을 늦추거나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다수 특례 및 사무이양 규정을 제주도법에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만 제주도와 강원자치도는 같은 특별자치도라는 점 외에는 지리적·역사적·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법을 입법례로서 참고하되 강원자치도의 특색 있는 발전이 곧 국가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적절한 특례와 꼭 필요한 발전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논의는 개별 특례 등에 대한 부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조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명과 총칙(제1편)이 되겠습니다.

제1편의 구성 제명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칙에 있어서는 목적부터 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6조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제2조(정의) 부분만 본칙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명 및 목적(안 제1조)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는 목적에 있어서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이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의 규정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대한 정의,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한 정의, 교육특구에 대한 정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제외한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교육특구는 일부 규정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정의 규정에 규정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에서 약칭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법률안 전반적인 내용과 제명, 목적, 정의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웅천 위원님.

○조웅천 위원 저번에 공청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가겠다, 그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

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하겠다, 그럴 위해서 필요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좀 확보하든가 혹은 사회적·역사적·경제적 그런 연관성을 갖다가 부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내’라는 취지인지, 각 광역단체가 ‘우리는 뭐로 정한다’라고 하면 그게 앞으로도 거기서 네이밍하는 대로 작명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건지 앞으로 선례가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차관님,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공청회 때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참가자들은 강원자치도의 비전 실현과 또 낙후된 강원도의 여건,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일부 글로벌산업도시를 위한 규제완화 특례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려하시다시피 다른 특별자치도가 추가로 논의될 때 작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자치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특례라든지 각종 규제완화를 관계부처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강원도 특별법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하루 이틀 만에 너무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특히나 이 법안은 전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또 여러 법안들 간에 이해충돌은 없는지 다양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번 이 법안을 보면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일부 지역의 일부 시민들이 동원이 돼서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들어와서 물리적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법안들이 이렇게 이해당사자들끼리 물리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법안을 심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기 본관 우리 상임위원회 복도까지 일반 시민들이 이해당사자들이 수십 명 몰려와서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하도록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출입증을 배부를 했으며 누가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이 돼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까? 법안 심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최소한의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또 향후에 재발 방지나 이런 게 분명하게 선결이 된 뒤에 이 법안 문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그저께 저희가 법안심사소위 하는데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온 것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오늘은 김진태 지사가 저한테 왔는데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빨리 천막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선례가 되면 충북도 할 거고 나머지 도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국회의 권위는 무너지고 우리가 법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

저도 국회사무총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 텐트를 허용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방호과에서 굉장히 막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 의원 명의로 됐기 때문에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것도 유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입을 한 것은 아마 특정 의원실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든가 뭔가 강하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김진태 지사한테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도 굉장히 불쾌함을 감추기가 어려웠는데 어찌 됐든 또 법안심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소위를 열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우리 여기 경내의 텐트는 어느 의원 명의로 했고 본관 출입은 어느 의원 명의로 했는지 그것 밝혀 주십시오. 최소한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 밝혀 주십시오.

어느 의원 명의로 했습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그것은 이 소위 현장에서 제가 밝히기는 뭐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웅천 위원님.

○조웅천 위원 저도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한 언론 기사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민과 김진태 지사의 국회 천막투쟁 통했다, 강원특별도 완성법 논스톱 심사 급물살’ 해 가지고 ‘그동안에 행안위가 비정상적으로 멈춰 세웠던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소위 심사에 오늘 돌입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심사하게 될 강특별 전부개정안은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거의 2주 만에야 실질 입법에 들어가게 됐다’.

저는요 지금 이 소위가 혹은 행안위가 천막투쟁에 떠밀려 가지고 심사를 하는 듯한 이런 자괴감 때문에 사실은 아침부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유감 표명을 촉구합니다.

현직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우리 소위 앞까지 와서 같이 큰소리로 목소리를 높이고 또 우리 위원들 대기실 들어와서 상정하라고 고압적으로 얘기하던 게 잊히지가 않습니다. 사과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사과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웅천 위원님 말씀대로 김진태 지사가 여기 와서 사과 표명을 해야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이해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말씀을 주세요.

○조웅천 위원 여기 오든지 아니면 언론에 내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야당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사가 와 계시면.....

○소위원장 김교흥 지사 여기 와 있어요.

○정우택 위원 직접 오셔서 지금 말씀대로 유감 표명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교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를 하기 전에, 아까 여야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소위를 속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입니다.

먼저 김교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법 이렇게 소위에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이렇게 된 데 이르기까지, 천막 농성을 한다거나 또 여기 와서 회의장 복도에서 소란행위가 있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그동안 수십 년 숙원 사항인 이 법 처리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빚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렇더라도 회의 운영에 불편함이 있으셨다거나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원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지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강원특별도법이, 법도 우리 소위에 숙려기간도 탈피해서 급하게 해 드렸고 공청회도 또 빨리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저께 엄청난 모욕적인 발언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 길 가는 것도 막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 버리면 다른 지자체나 법안의 이해관계자들이 또 국회로 올 수밖에 없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위 심사자료 1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2편의 1장과 2장의 구성이 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중에서 제8조(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및 선임방법 시범도입 등에 관한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선관위와 행안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삭제를 하였고요.

12조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고, 부처 의견 반영 그리고 또 결정하실 사항이 있겠습니다.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지사 선거 및 도교육감 선임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안 8조 부분인데요.

입법 취지는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자치도 및 교육감 선출 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주도법의 유사 규정과 비교 시 개정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기관 구성 형태가 아닌 도지사·도교육감의 선임방법·선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개특위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안건이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정부 측 의견 답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선출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 검토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삭제? 그러면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0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련된 안 12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게 제4호·5호·6호·7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4호하고 7호의 신설에 있어서는 신설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자유화 추진 관련 실체 규정과 연계하여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행정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5호와 6호에서는 본칙 규정의 도입에 맞춰서 심의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 미도입 시에는 이 부분이 삭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8호에서의 도교육감의 심의위 안전부의권 부여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 조문대비표의 수정의견을 보시겠습니다.

1호·2호·3호는 개정안과 같고요. 뒷장의 22페이지 4~7호도 개정안과 같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한 규제자유화 관련된 조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법에도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강원도법에도 규제자유화의 추진이라는 조항을 두고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제4~7호까지 신설한 조항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8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지자체장의 통할대표권이라든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없습니까?

○조응천 위원 잠깐만요.

○박성민 위원 조응천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소위원장 김교흥 왜 조응천 위원만 얘기합니까? 다른 위원들도 얘기해야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할 부분 삭제하는 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할 말씀 있으세요?

○조응천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음은 26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제2편제3장 자치권 강화 관련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현행·개정안에 큰 차이가 없는 데 반해서 15~21조까지는 신설된 조항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16조(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조부터 21조까지 행안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으로 수정의견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의회위원의 정수 및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가 되겠는데요.

시군별 도의회의원 최소정수가 현행은 인구가 5만 미만인 시군에 1명, 5만 이상인 시군에 2명입니다. 개정안은 인구에 관계없이 모든 시군을 2명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정수 조정 주체가 현행은 국회이고 개정안도 국회입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의 주체가 현행법은 국회가 되겠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도선거구획정위원회와 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소정수 확대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선거구획정 방식의 변경 관련해서는 기초의원 총 정수 및 선거구획정의 지연 가능성 그리고 제주도·세종시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강원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하는 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와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반영해서 29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은 15조, 16조를 다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도의회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0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0페이지는 조직·인사 운영의 특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가 현행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각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이 상향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범위 및 임용 절차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는 연혁 그리고 증원 필요성 그리고 정책지원 외의 목적으로 운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직급 상향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업무의 특성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그리고 강원자치도에 한정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임 방식의 변경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에 대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제도 도입 초기인 점 그리고 정책지원 외의 목적으로 운용될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조직·인사특례 부분인데요.

18조·19조·20조·21조, 전체적인 틀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원자치도 및 도의회의 조직권 및 인사권 확대 필요성 그리고 조직·인사의 방만한 운영 등 부작용의 우려 그리고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고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차원에서 도입 여부 등을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도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강원자치도의 경우 행정체계의 특수성과 행·재정 특례, 행정수요 증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례 부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뒤의 32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까지 수정의견으로 삭제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먼저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인사특례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인데요. 지방 조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당 부분 지방 조직에 자율성을 주는 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충분히 특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육자치, 자치재정 및 감사위원회 제2편제4장부터 제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제2편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4장 교육자치, 제5장 자치재정 그리고 제6장은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자치 및 자치재정 특례에 관련된 제4장과 제5장 부분입니다.

교육자치조직권 부여 부분인데요.

제주도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부교육감 등 보조기관 및 교육지원청 설치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각종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설치단위 변경의 경우에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해서 양양군에도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교육자치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제주도법 입법례에 비추어서 특례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명확한 조 숫자는 없지만 0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규정을 둬으로써 법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국적으로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교육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예? 뭘 반대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어떤 면에서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첫 번째,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교육감 소속으로 별도로 부교육감을 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부교육감을 추가로 더 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지금 1명 있는데 더 둘 수 있단?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이 조항이 그런 조항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자치도하고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래서 그거 반대한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나머지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교육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여기는 조례로 할 수 있단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결국 차관님 말씀은 이게 도조례로 갈 경우에는 학생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각 기초단체별로 교육지원청이 다 설립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별 실속이 없는데 지원청이 난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그런 의견을 내셨다는 취지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입장에서 조례로 위임할 경우에는 지금 같은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고요. 현재도 사실은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부 소속의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 이 조항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은 혹시 청취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교육부도 반대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교육부 나와 계시지요? 없습니까?

○조응천 위원 반대의견으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소위원장 김교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시행령의 범위를 위반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말하자면 위법한 조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의 위계를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각종 정부의 훈령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방의 조례를 규정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데 도교육감에 대해서 법률에서 위임을 한다면 대통령령을 거치지 않고 조례로 바로, 자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지방자치법 지난번에 전부개정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때 행안위에서 법률이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었다가 법사위에서 법률이 법령으로 바뀌었어. 그거 내용을 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법령이란 대통령령까지 포함한 위임 범위에서 조례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항들을 도조례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간벽지가 많고 아마 교육의 일반적인 체계 자체가 다른 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도시 지역하고는 또 상당히 많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할 수 있게 해야, 그래야지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가지요.

그런데 과하게 모든 걸 법률이나 시행령으로만 규율하게 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상당한 어려운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라든가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가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을 과하게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법령에서 대통령령에 같이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하신다는 말씀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률에서 기타 보조기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조례로 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령 대통령령까지 위임을 받는 건지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 자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초월하는 겁니까? 정수와 관련해서 법률에 이렇게 정수가 돼 있는데 도조례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부교육감 수를 늘린다고든가 또는 보조기관을 더 둔다고든가 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교육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해식 위원** 조례 내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법률에서 위임을 하게 되면 대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조례로 다 규정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부교육감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1명을 더 두든 2명을 더 두는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차관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강원도라고 하는 산간벽지의 특성상, 교육지원청을 2개·3개 시군 단위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교육지

원청을 두는 것은 교육의 자치권 확립을 위해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물론 적은 인구 속에서 교육지원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교육지원청을 뒀서 초중고에 그 지역의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일반 시도하고 강원도는 약간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리적인 특성은 충분히……

○**소위원장 김교흥** 지리적인 것도 있고 그 지역의 역사성도 천양지차로 다를 텐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 따른 자율성 부여에서 사실 정부 조직이나 인력이 늘어난다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전체적인 정부조직이나 인력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자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또 지방자치권을 행사하기……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지금의 정수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지원청을 두어서 초중고를 그 지역에 특화되게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도.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 것 관련해서 조항이 같이 개정이 안 되고 자율을 달라는 것만 지금 논의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조직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으로 가야 됩니까?

○**김용판 위원** 정부 측 의견대로 가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0페이지 자치재정 특례에 관련된 안 29조가 되겠는데요.

개정안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재정준칙 등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기재위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계 법률안이 심사 중이므로 해당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문대비표에 삭제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2페이지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무기구 운영의 자율성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임용하기 때문에 임용권자에 맞추어서 사무직원의 지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8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8쪽 비밀유지 및 정치운동 금지 의무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요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감사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체에 대한 감사 실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 감사 실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원자치도의 사무 집행 자율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가 인정되고 있는 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감사를 통한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국가행정의 통일성 확보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항을 조문대비표 제38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특별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외부감사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것은 동의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제주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제주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3편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련된 내용 중 제1장입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39조와 40조가 해당되겠는데요. 39조에 있어서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54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내용은 1호부터 17호까지 있고 송기현 의원 소개 청원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광역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된 부분은 제주도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강원자치도의 최상위 종합계획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획의 내용 중에서 제3호 도로·철도의 경우는 국토부에서 삭제 요청이 있었고요.

제5호의 ‘평화기반 조성’이 ‘남북 간 평화기반

조성'으로 한정되어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6호는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괄호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송기현 의원 소개 청원 부분은 난개발 방지 및 광역시설 공동활용 촉진 등의 취지로 체계적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교육도시 관련 본칙 규정의 도입 시에는 이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55페이지의 수립 절차입니다.

제주도법과 달리 도의회 동의 절차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의회 동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및 타당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주도법 및 기타 입법례와 달리 군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우선 적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토종합계획도 우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과도 조화롭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종합계획 심의회 부분입니다.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구성에 있어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산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심의회 위원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산림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의견에 이 부분을 반영하여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도 감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앙행정기관 감사는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지만 제주도나 세종만큼의 그런 특수성을 가진 자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용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차관님, 39조 종합계획의 17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호까지 국토부는 도로·철도를 빼라, 다른 부처는 어쨌다라고 하는데 17호에 포괄적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열어 놓고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호의 도로·철도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17호에 따라서 이걸 종합계획에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 기타조항은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인데요, 위에서 제외된 사항이 다시 기타로 추가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입법 연혁을 쭉쭉 다 들여다보아지 '아, 이게 이래 가지고 빠졌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연년 세세 지나 가지고 나중에는 도로·철도가 빠진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관심을 안 기울일 수도 있고. 그래서 17호에 따라 가지고 도로·철도가 도지사에 따라서 '이번에 나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 해 가지고 쑥 들어갔다, 이걸 강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도지사가 그냥 인정하면 다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위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 아니냐. 뭐라도 좀 좁혀야 되지 않느냐, 입법기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회의 기능을 서술할 때, 통상적으로 종합계획이라든지 할 때는 위에서 나열된 그런 조항에 이어서 기타로 할 경우는 위에서 관련된 조항에 포함된 것은, 연관해서는 아마 별도로 추가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사항을 기타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응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철도가 지금 국토부가 반대를 해 가지고 여기서 빠지는 거지만 나중에 한 10년 후에 도로·철도가 17호에 따라 가지고 논의가 됐을 때 이 위임 범위에 빠졌다, 지금 저희는 딱 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10년 후에 얘기했을 때는 이게 위임 범위에 빠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때는 찾아 가지고 ‘그건 이래 가지고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제외가 될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제5호의 평화기반 조성이 남북간 평화기반 조성으로 한정돼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문 내용을 조정하자 이게 통일부 의견인데, 조정하자는 게 삭제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 삭제 아닙니다. 57페이지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의 5호 보시면 살아가는 있는데 ‘평화기반’을 앞쪽으로 빼 가지고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차관님, 여기 근거는 뒤야겠네, 조응천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법안을 다루면서 있던 게 빠졌던 연혁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앞에 좀 적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의 16번까지 다 인정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이걸 문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아주 일반적인 규정 방식인데 입법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사실 기타를 갖고 위에 있는 것을 무한정 해석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그러니까 있다가 빠진 거라는 게 계속 검증이 되면 지금 차관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예를 들면 도로·철도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로·철도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거지. 있다가 빠진 것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뭔가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는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봅니다. 나열식 표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래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큰 문제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다른 일반 법률에도 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것은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16번까지의 규정이 돼 있는 것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항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법에 근거가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랑 없는 거랑은 실질적인……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 오히려 ‘1호부터 16호까지 부수하는’ 뭐 이런 전제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방향으로 번지지 않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것은 더 제한적으로 ‘그 밖의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더 확대해석을 할 필요 없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예, 그걸 넣어야 해요. 이걸 꼭 넣어요.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그건 1~16호를 추진함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의 효력 내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보니까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조응천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가 법률에 따라 가지고 다른 계획을 세워도 이게 우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우리 본토에 있는 거지요. 본토에 있는 거고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제주도처럼 딱 떨어져 가지고 고립된, 고립됐다고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지금 14호 수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다. 만약에 강원도에서 물길을 돌린다든가 수자원을 대거 개발한다든가 하면 하류 쪽의 수량이 고갈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9호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 이런 것들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경북 충북까지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잡고 확정하지 아니하고, 강원도의 도지사가 도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수립하면 그게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된다면 이것은 자칫 지역이기주의가 만약에 발동이 될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게 부처에서 이의 없는 걸로 그냥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조항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는 특별자치도법이 우선을 하지만 계획수립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다른 계획과 상치될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조응천 위원** 아니, 여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차관님 말씀이시고요 안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장치를 뭐라도 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님,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을 갖고 운영한다는 거니까,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 내에서 자율을 갖는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런데 물과 공기, 오염물질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강원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제주도 말씀드렸는데 제주도는 본토로부터 멀리 이격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제주도만의 그런 일로 치부를 할 수가 있겠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조응천 위원님 말씀을 보면, 59쪽에 ‘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수정안 4항에 나오니까 거기서 정리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조응천 위원** 이것은 선의에 기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장치는 미리 마련을 해 놔야지 그것 없이 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송재호 위원님.

○**송재호 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원래 강원도 계획이 다른 계획에 비해서 우선한다는 취지는 제주도 경우도 맞는데 전제가 뭐냐 하면, 계획이라는 게 부처가 하는 정책이나 업무를 구체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부처의 업무가 이관됐을 때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서 또 그 계획이 기재부의 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이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조응천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정확해지지요.

그러면 국가 전체로 봐야지 강원도만 그러면 곤란하지 않냐 하는데 지금은 정부 부처의 업무가 강원도로 이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 말짱 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요. 이관이 안 되었지요.

○**송재호 위원**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기재부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 줘요, 이걸 국가 계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 조항으로 해서 넘어가야지 이걸 여기서 따지기 시작하면……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요. 제주도도 처음에는 그랬었지요. 그러다 가면서 개정안을 낸 거예요. 가면서 개정을 했지.

○**송재호 위원** 지금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강원도는 지금 정부 부처 업무는 이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주도 사례를 보니까 특행기관이니 뭐니 이관해 봐야 이게 작동 안 하니까 강원도자치법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만 이렇게 달랑 지금 와 있어서 실효성은 사실 없는 거지요.

지금 조응천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타당한데 여기서 이걸 전부 따져 놓으면 자치 전체를 또 봐야 되니까 상징적으로 종합계획을 이렇게 냈다 의미로 해석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도로·철도를 굳이 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응천 위원** 말짱 황인데 이것 뭐 하려고 합니까?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와 철도 관련해서 도지사가 도 자체 내의 어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입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에 입각해서 입안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광역교통과 관련된 정부의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세웠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에 이런 계획이 집행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 국토부 관계자나와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굳이 도로와 철도를 빼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하나의 계획이고 입안을 위한 어떤 조치라고 하면 굳이 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정부 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조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래도 관계부처에서 예산이라든지 행·재정 지원을 할 때 법률에서 인정을 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이게 어떤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 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어떤 미래 자산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만일에 이게 다른 어떤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허울만의 규정이라면 왜 철도와 도로를 제외해 달라고 국토부가 얘기하겠냐 말이지요. 군사도 마찬가지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더라도 종합계획과 관련된 관계부처에서 권한이양이 안 됐다면 사실은 계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계부처에서 권한이양이 협의가 안 된 부분 또 불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에서도 제외해 달라고 관계부처와 그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

거해서 강원도가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하나의 법정계획으로서 어떤 위상인가……

○소위원장 김교흥 그야말로 그냥 뭐 계획이지.

○이해식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소위원장 김교흥 그야말로 계획이에요. 그래서 59쪽에 4항을 둔 거예요.

○이해식 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힘과 관계됐을 때는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교흥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차관님, 이게 그냥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송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렇게 법정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소관 부처는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해라라고 요구를 받을 때 그냥 건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설명서 들고 가 가지고 건의하는 것하고 이렇게 법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것하고, 압박을 더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법정계획 세웠는데 안 하나?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압박이 점점 더 가중될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나중에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럴 때는 연례행사로 이게 공약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이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실행이 되는 거지요. 그럴 우려는 없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관계부처에서 권한을 이양한다든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 초월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 오더라도 관계부처에서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는 취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존의 정부 내에서, 행정지자체적인 틀,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조응천 위원 아니, 다른 법령보다 우선한다면 서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계획은 우선하지만 그 계획 수립 자체가……

○소위원장 김교흥 계획만 우선하는 거야, 계획. 실행이 아니고.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

은 기존……

○소위원장 김교흥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넘어가시지요.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우선한다는 것 이걸 빼야 되는 것 아니야?

○소위원장 김교흥 이거 만약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 법이 의미가 없어져.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한다는 걸 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김용판 위원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소위원장 김교흥 김용판 위원님.

○김용판 위원 이게 우려는 되지만 3항, 4항에서 예외를 두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3항은 삭제할 거고 4항만 들어가면 돼요.

○김용판 위원 아니, 3항에 단서를 넣었잖아요. 수정안 3항에 단서가 들어가고 4항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수정의견 3항 이거 들어가는 거야?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입법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55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입법례 보시면 제주도법 같은 경우에는 군사에 관한 사항만 그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 발전 촉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만금 법의 경우에는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가져온 것처럼 국토종합계획하고 군사시설 보호, 군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4항,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9페이지의 3항과 4항으로 한 입법례는 이 법이 처음입니다. 지금 조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의견에 3항만 두게 되면 이 계획이 너무 우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4항을 뒀는데요. 만약에 지금 체계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된다고 하면 3항을 삭제하고 4항만 두게 되면 법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응천 위원 저는 우선하는 이 조항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를 들어서 섬 발전

촉진법도 동일한 규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계부처에서 섬 발전·진흥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부처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데 특별히 상충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존에 국토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섬 관련 업무하고 개별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범위 내에서 행안부에서 섬 발전 촉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판 위원 저는 그대로 뒤도 수정안 이게 충분히 목적 달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3항 빼더라도 4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김용판 위원 수정안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해식 위원 4항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렇다면 3항, 4항을 같이 넣는 게 맞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3항, 4항 같이 넣지 뭐. 국토기본법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군사기지·군사시설 들어가니까.

○조응천 위원 3항은 현찰이고 4항은 어음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3항, 4항을 다 집어넣지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하는 건 현찰이고 조화하도록 하는 거는 어음이기 때문에 좀 맞지가 않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3항을 빼고 4항을 넣으면 제가 보기에 관계기관끼리 협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논란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조 위원은 그게 어음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조응천 위원 아니, 3항 빠지면 괜찮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3항 빠지면 되잖아요.

○조응천 위원 예.

○소위원장 김교흥 그래요. 그러면 3항 빼고 하면 되지요.

○조응천 위원 예.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게 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5항을 빼라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3항.

○이해식 위원 아, 3항으로 갔으니까.

○김용판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 3항을 통째로 빼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3항을 빼면 돼요, 4항만 집어넣으면.

○이해식 위원 4항만 집어넣고?

○소위원장 김교흥 예.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의 제2장제1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2조에 결정하실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44조 관련된 부분도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4페이지 연구개발특구 및 강원과학기술원 지정·운영 특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개별 법률상 요건 및 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 강원과학기술원을 지정·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관련해서는 현재 요건 등을 완화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제도가 기시행 중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원자치도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완화된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전 광주 대구·경북 울산 등 총 4곳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기술원 설립을 통한 균형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그리고 별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5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조에 보시면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받아서 지정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재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 타 지자

체 남발 우려 등을 통해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원을 그렇게 많이 선발하지 않아도 되는 200명 정도도 가능한 케이스가 되고요. 현재 우수한 인력이 의대 진학으로 쏠리는 현상 등을 고려할 때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과기부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의견과 좀 다른데요. 현재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또 대학 신입생 충원을 감소, 입학 지원 감소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 정부 측 의견대로 쪽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판 위원 정부 측은 강원과학기술원을 반대한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강원과학기술원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응천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카이스트나 광주·대구·울산 과학기술원은 별도 설립법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것은 별도 설립법이 있어요.

○조응천 위원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개별법이 따로 다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개별법으로?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조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더라도 개별법으로 가야지.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이걸 두고 개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지.

○김용판 위원 ‘설립할 수 있다’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근거만 두고 따로 개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김용판 위원 ‘있다’이기 때문에 있어도 문제없

다고 보는데요, 여건 되면 하는 거고.

○소위원장 김교흥 할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 정도는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개별법 만들 때 그때 법안 보는 거지.

○김용판 위원 이거는 개정안 그대로 가도록 하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위원 그런데 법에 ‘할 수 있다’ 이걸 왜 넣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뭐지요?

○김용판 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법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개별법 만들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강원도가 자기네 특성을 살려서 좀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과학기술원 같은 것을 자기들도 뒤 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요.

○조응천 위원 저는 정부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보세요?
송재호 위원님.

○송재호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부 측 의견대로 쪽 가는 게……

○김용판 위원 정부 측 의견이 정확하게 뭐예요?

○소위원장 김교흥 이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재부가 지금 이 관련해서 과기부하고 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같은……

○소위원장 김교흥 기재부도 반대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이해식 위원 기재부는 타 권역에서 유사 요구가 남발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 여기 만들어지면 다른 데도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기재부는 거의 반대하잖아.

○조응천 위원 예, 다 반대해.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과기부도 반대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 그래요? 그러면 못 하겠네.

○이해식 위원 한 가지만요.

대전이나 광주 대구·경북에 과학기술원이 설립됐을 때 이 수요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한 거예요?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에서 한 거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지요. 과기부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당시 개별건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지방의 요구란 말이에요. 지방의 요구인데 이걸 강원특별법이라고 하는 데 답는 게 어떤 면에서 체계상 맞느냐. 국가적인 전체적인 어떤 계획 속에서 바라봐야 될 텐데 지방의 요구라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걸 거고 그런 면에서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각각의 기관을 개별법으로 설립한다면 개별법으로 제정할 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정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관련……

○소위원장 김교흥 여기 안 뒤도 개별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보자는 것 아니에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굳이 넣지 않아도……

○소위원장 김교흥 예, 그래요. 정부 측 의견대로 하십시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67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7페이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관리 특례입니다.

개정안은 개별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목적과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목적이 사실상 동일한바 일반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차별성 및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 입법화 시에는 제2항과 4항과 관련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도지사 추천 사업시행자에 민간사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성 관련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신규 특례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에는 개별 조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응천 위원 좀 봅시다.

○송재호 위원 막간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김교흥 예.

○송재호 위원 이게 자꾸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이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기 전까지는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 시 물환경 관련 개별법 적용 특례 관련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입법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는 제주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화 시에 하류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상·하류 지역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우에도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44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실익이 없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고요. 45조·46조는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답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4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 권한이양 관련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와 지자체가 조성·운영하는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의 차이 그리고 통일적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항 중앙행정기관장의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7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3편 2장 2절의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8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같은 경우에는 수정 수용을 해서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다음에 5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관련된 부분도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78페이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정 요건을 보시면 최소면적 기준이 있는데요. 3만㎡ 이상 기준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등의 최소 규모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준의 적정성 및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을 통한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해서 최대면적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9페이지 지정 절차입니다.

관할 시장·군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보

완해서 인근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지구 지정 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면적 81%가 산림으로서 대부분 지역에 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환경 갈등 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환경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대상 지역에 국유림이 포함되는 경우 산림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산림청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성격을 감안할 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시 일반적으로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기타 부분에서 국가의 시책 마련 부분은 강원 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면에 있어서 국가 보다는 강원자치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본계획은 통상 5년이나 10년 등 주기를 가지고 수립이 돼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을 법에서 보통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보다는 개발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81페이지 지구 지정의 효과 부분이 되겠는데요.

개정안의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개별법상의 각종 지정·변경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내용에 한정해서 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의 효과 중에서 7호 부분입니다.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이 있었구요.

11호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3만㎡ 미만의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관광휴양단지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2호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삭제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구 지정의 효과를 12호까지 보시면 산림에 지정돼서 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항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구 지정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 산단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도시개발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지구 지정의 효과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2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48조 1호에 보면 3만㎡ 이상으로 해서 대규모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 3만㎡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2항에 보시면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수정의견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산림청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당연히 산림청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제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산림청의 의견대로 하게 되면 산림청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국유림으로 한정돼서 좁아지는 측면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에서는 말씀드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지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생략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먼저 78페이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와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반영한 조항입니다. 협의한 내용대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79페이지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장과 협의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타 국가의 시책 마련 관련해서는 산림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둘 다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건의를 합니다.

80페이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도 저희들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별도로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정안을 유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81페이지 지구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손 든 분은 누구지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왜 손을 들어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88페이지에……

○소위원장 김교흥 나와서 얘기해요. 위원들이 질문도 안 했는데 본인이 손부터 들고 얘기하겠다네. 뭐 답답한 게 있나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입니다.

88페이지에 진흥지구 지정 효과와 관련해서 10호입니다.

10호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강원도 이용지구를 지정할 때 민통선 이북지역하고 아닌 지역을 걸쳐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의견 제출한 이후에 강원도하고 좀 더 협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단서가 필요하겠다는 이렇게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흥지구 중에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민통선산지법 10조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같은 조 1항에 따른 면적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면적을 확대하는 거예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3ha 이상이 돼야 되는데 민북지역에 3ha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민북지역은 예컨대 2ha만 들어가고 민북지역 아닌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 단서가 들어가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차관님,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에 3만 헤베 이상 되는 산림을 개발해 가지고, 도시 개발하고 택지 하고 산단 조성하고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산림 진흥 관련 사항입니다.

○조응천 위원 저는 산단, 물류시설 이렇게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네. 너무 나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평창올림픽 있잖아요. 그것 삼수 끝에 국가적 지원 통해 가지고 유치하고, 어쨌든 그때 경기장 시설 들어오는 데마다 엄청나게 규제완화하고 또 전폭적인 국가 재정지원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14조에 달하는 재정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TX도 개통이 되고 그랬지요.

그러면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올림픽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것도 뭐 알펜시아인가요 뭐가요, 그 이후에 운영난을 겪어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어쨌든 그때 막 청사진을 띄워 가지고 개발하고 그랬는데 평창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직도 그게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 평창에 대규모로 개발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그 뒷감당을 하느라고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또 산지를 3만 헤베 이상씩 대규모로 훼손해 가지고 산단까지 만들고 물류단지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계획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정부 부처 간에는 그런 거 논의한 바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평창올림픽은 국가적 행사를 위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강원도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응천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강원도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산림이라든지 환경·국방 분야가 강원도에서 가장 지금까지 소외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특별자치도법에 상당 부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산림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

분야를 다른 지역과 달리 특화해서 진흥을 지원하는 것은 자치도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조응천 위원 그래도 손을 절대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산림이 있을 것이고 또 손을 대도 되는 그런 산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돼야지, 3만 헤베 이상으로 산단까지 들어가고 도시 개발하고 이걸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 산단하고 물류단지를 산림을 개발해서 하는 거는 아직……

○조응천 위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산단이라든가 물류창고, 물류단지 이런 게 강원도에 3만 헤베 이상으로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산림을 많이 훼손한다는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송재호 위원님.

○송재호 위원 이게 자꾸 법안하고는 좀 동떨어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악랄한 지사가 오면 이거 되느냐는 가정인데 그렇잖아요, 특별자치법이라는 게. 그것까지 다 여기서 견제하는 견제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니 강원도가 해 보자는 것을 좀 크게, 수계라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상징적으로 허용하는 게 지금 법안 심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장님,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향을 보시면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는 사실은 진흥지구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진흥지구에서 하는 것은 그 위의 조항입니다. 49조에 보면 진흥지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단이라든지 물류단지 관련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소위원장 김교흥 9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49조입니다, 49조. 49조, 48조에 보면 진흥지구의 기본계획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산림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산단·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산단·물류단지를 산림을 개발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지구 지정의 효과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을 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의제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50조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김용판 위원 저도 송재호 위원님 의견대로 큰 틀에서는 강원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지켜보는데 적절하다 그리 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은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조응천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위원 아니, 이게 강원도의 특색을 살린 산지 이용·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흥지구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산단·물류단지 산림을 개발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87페이지의 50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에 보시면 진흥지구 지정이 있을 때는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의제조항에 지금 산단하고 물류단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49조(진흥지구 기본계획)에 보면 산단이나 물류단지를 내용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것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본계획 부분은,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2호에 진흥사업의 시행 방식과 기간이라고 해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제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류·산단을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싶으면,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해 줘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블로킹 작용은 있기는 있습니다. 블로킹 작용이 있는데 이걸 법에 두게 되면 그 블로킹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법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 준 게 되니까 아예 여기서 그 블로킹 자체를 빼서 없애느냐 아니면 협의할 수 있는 블로킹 작용을 믿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삭제를 해 버리면……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삭제하면 아예 협의가 안 되니까 물류단지를 진흥지구에 설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청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청장이나 여기하고?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지구 지정의 효과에서 7호, 11호, 12호는 해당 부처에서 지금 빼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빼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그러니까 해당 부처에서 의견이 안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만 7호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준 거란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7호만 하고 나머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11호는 농림부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거고 12호는 이것도 환경부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7호, 11호, 12호가 반대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산단과 관련된 게 3호에 있고 물류시설과 관련된 게 5호에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부처는 특별히 문제없다 내지는 그냥 넘어간 상태인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대로 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산단을 만든다든지 물류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당연히 산림이 훼손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산림청장과 협의하는 그 절차는 있기 때문에, 그러고는 자율을 줄 수 있다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이게 사실상 강원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바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3호 내지는 5호 정도는 빼고 가야지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교흥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하고 강원도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 부분을 동의를 해 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를 하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과연 그러면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이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문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가 그동안에 삼중사중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부담을 감수해 왔다는 거 다 인정하지요. 인정하지만 이제는 그 부담을 규제완화 그리고 지원 뭐 이런 걸로 만회하겠다, 그걸 일거에 하더라도 강원도의 특색을 살리는 것 특수성을 살리는 그 범위는 남겨 놔야지 국민적 동의,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훼손하고 산단이나 물류단지로 다 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훼손행위에 대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 제도 이거를 좀 바꿔 가지고 보전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이런 걸로 바꾸는 것도 저희가 이제는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더 나가는 얘기고. 만약에 그걸 도입한다면 강원도가 제일 먼저 혜택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그 전에라도 적어도 산단이나 물류 이렇게까지는, 이거는 너무 나간 거다. 이거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적어도. 그래서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말씀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담당 부처인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고요.

위원님, 48조의 진흥지구 지정에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충분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해서 지구 지정에 관한 큰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시도 의견을 수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산림청 국장님, 지금 위원님

들의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게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특별도로 가느냐 아니면 너무 그동 안에 묶여 있던 부분을 풀려고 개발 중심으로 이게 가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산림이용진흥지구 이걸 만약에 해서 예를 들면 물류센터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우리의 자연경관은 훼손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또 커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메시지도 많이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진흥지구 지정하는 데에는 좀 유연하게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좀 더 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협의를 했고요. 진흥지구 지정 효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법을 담당하는 부처와 다 미리 협의를 해야 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판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견제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

○소위원장 김교흥 견제 장치는 있기는 있지.

○김용판 위원 그래서 이거 불신해서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이 강원특별법 자체를 그냥 반대해야지요.

○조응천 위원 이 법 1조(목적)를 보겠습니다.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쪽쪽 나와 있습니다.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조항은 목적과는 배치됩니다. 자치법의 제정 목적과는 배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정도는 제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1조에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48조부터 50조의, 산단을 설치한다든가 물류단지를 지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 부합되는 것이냐,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응천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

○소위원장 김교흥 목적에서?

○조응천 위원 아니, 산단과 물류단지는.

○소위원장 김교흥 산단하고 물류센터?

○조응천 위원 예.

○소위원장 김교흥 김용판 위원님.

○김용판 위원 그 목적에 보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불신의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전혀, 이 법 자체 전체를 부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지금 이거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정회하고 점심 드시고 이따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교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위 자료 87페이지 제50조 3호와 5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부분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3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쪽 해서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셔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진흥지구 지정 효과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서 물류단지 지정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외하는데, 산업단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김교흥 거기다 친환경만 넣지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데 48조에 보시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의 방향을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굳이 나열을 안 해도 일곱 가지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구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4호에 보면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조응천 위원님 괜찮습니까?

○**조응천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구체화를 시키고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이 됐건 뭐가 됐건 좀 구체화를 시키는 쪽으로 입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래요, 구체화해 주면 큰 문제 없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미래산업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제시하는 첨단 쪽만 한다면 강원도에 들어 보니까요 말산업단지를 우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교흥** 말, 그것 좋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데 그게 첨단산업 단지로 제한을 해 버리면……

○**소위원장 김교흥** 친환경이잖아요, 그건. 말은 친환경이지. 말은 사람 후각의 70배야.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그런 용어라면 48조에 다 이미 전제를 해서 이것에 따라서……

○**소위원장 김교흥** 법의 취지나 또 산림훼손 자꾸만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을 넣어 놓는 게 낫지요.

○**조응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90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송재호 위원** 이것은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딱 보고 아닌 것만 빼고……

○**조응천 위원** 그런데 크리티컬한 건 도저히 안되지요.

○**송재호 위원**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것만 보면 돼.

○**소위원장 김교흥** 조응천 위원님 열심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0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조는 사업시행자에 관한 것이고 52조는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정의에 있어서 여러 용어가 혼용 중에 있어서 산림이용진흥사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1조·52조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91페이지 실시계획 수립 등 및 인허가 의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시계획 수립 절차 부분입니다.

먼저 실시계획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영향 등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수렴이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뒤의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 92페이지 51조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52조도 같고요. 95페이지 3항에 보시면 수정의견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서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응천 위원** 어디 있지요? 지금 못 찾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5페이지의 수정의견 3항입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인허가 의제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3호는 국토교통부에서 삭제 의견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 있는 7호는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삭제 의견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8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조응천 위원** 6호는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호의 경우에는 산자부

가 삭제 의견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3호, 5호, 6호, 7호.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호, 6호, 7호, 8호.

○소위원장 김교흥 3호, 6호, 7호 여기는 삭제.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그건 삭제입니다. 8호는 수정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의 22호 자연공원법,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는 환경부에서 삭제 의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응천 위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많아서.

○소위원장 김교흥 봐야 돼요?

○조응천 위원 예, 호가 이렇게 많은데……

○소위원장 김교흥 봐 봐요, 그러면.

○조응천 위원 회의 자료가 심사 자료가 어제 한밤중에 왔습니다. 못 본 상태로 왔어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보시라고.

이것 간단한 거야, 내가 봐도. 원래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야.

○조응천 위원 자정에 왔어요.

○소위원장 김교흥 왜 저한테 그래요?

○송재호 위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건 개입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소위원장 김교흥 일단 넘어가고 보면서 또 나중에, 아직 의결하는 건 아니니까.

조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잠깐만요, 다 봐 갑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음, 101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토지 등의 수용·사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사업 또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 관련해서는 개별 조항별 도입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어서 조문대비표에 이를 반영해 두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적용 특례 등에 있어서는 이 특례의 경우에는 안 102조와 동일한 취지이므로 중복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세·부담금 감면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감면·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삭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봐요, 환경영향평가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은 102조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2조에서 이 부분을 환경부하고 강원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를, 그 방식을 정했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관련해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은 강원자치도의 승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비용지원 이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항들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103페이지 59조와 관련해서는, 국가 및 강원자치도가 주체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지금 개정안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지자체로 하는 것 국가를 제외하는데 저희들은 개정안 원안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부처 협의 때 별도로 이견이 없었고 또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행령 제정할 때 국가에 대한 의무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성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차관님, 56조 2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 완충지역에서는 이런 행위를 사업시행자는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걸 뭐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조응천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갖는 것에 반해서 산림청 의견은 이런 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아예 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각호에, 지금 1·2·3·4호를 결정을 해 두자 하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법에서 결정을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산림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조응천 위원 그런데 ‘백두대간 보호법 7조 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7조 2항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금 다 트레이기 때문에 ‘불구하고’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백두대간 보호 법률에 의해서 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 106페이지에 보시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7조 2항이 있거든요. 왼쪽의 박스 되어 있는 것 개정안 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다음 각호가 1·2·3·4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1·2·3·4호를 하려면 그냥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청과 협의를 하는 건가요? 지금 법문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사업시행자가 일단 자기가 사업시행자에 해당되고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세우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응천 위원 사업시행자는 완충구역에서는 자기 판단으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까 인허가 의제 받듯이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되는 것을 특례로 뒀으니까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지요?

○행정안전부차치분권정책관 안승대 도지사입니다.

○조응천 위원 지사요? 종전에도 도지사였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잘 모르

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종전에는 중앙부처에서 한 거야.

○조응천 위원 종전에는 산림청에서 한 거지요?

○소위원장 김교홍 그런 것 같은데.

○조응천 위원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나오신 분……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종전에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유림은 지방산림청에서 하고 공·사유림은 시·도지사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게, 앞에 91페이지에 보시면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지사 승인 신청을 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조응천 위원 아니, 염려하고 말고 간에 종전하고 바뀌는 게 뭐냐고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그리고 여기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백두대간보호구역……

○조응천 위원 아니, 종전하고 바뀌는 게 뭐냐고요, 종전하고 바뀌는 게. 지금 이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하고 바뀌는 게 뭐냐고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지금 완충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거의 그 수준에서 넣어 놓은 겁니다.

○조응천 위원 절차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절차만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조응천 위원 종전에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종전에는 국·사가 나뉘져 있었고요.

○소위원장 김교홍 국유림하고 구분해서.

○조응천 위원 이제 국유림도 도지사가 한다?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예. 그러나 협의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하게 돼 있고.

넘어가시지요.

다음, 115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5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3편 제3장으로서 교육환경의 조성

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성표를 보시면 3편 3장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그리고 제2절의 교육특구 지정·운영 이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64조부터 80조까지 제2절 부분은 교육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주었고,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되 강원도와 교육부의 협의안으로는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안 60조·62조·63조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안 60조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에서 일부 조정 의견이 있고요. 63조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즉 마이스터고의 지정·운영 특례는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61조에서는 강원도 외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는 농어촌유학에 해당되지만 강원자치도 내 도시지역에서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는 미해당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 보시면 제60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에서 밑줄 친 23조 제2항에 관한 내용, 즉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교육위가 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한 게 되겠고요. 61조 부분은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면 유학으로 보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의 4항의 경우에는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교육부의 삭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60조·62조·63조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61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는 농림부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금 강원도 내의 도시지역에서의 농어촌학교 전학하는 경우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들

은 별도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래 개정안을 유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1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1쪽 교육특구 지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유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기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경과를 고려하되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육특구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65조부터 8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특구 내에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을 설립하려는 취지의 특례들이므로 역시 도입할 실익이 별로 없겠습니다.

122페이지 부처 협의 결과입니다.

교육특구 및 교육특구 내 국제학교 설립 등 특례 대신에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 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은 바꾸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정 목적 등에 있어서 큰 차별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부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123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4조를 교육특구의 지정 대신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글로벌교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을 신설했는데요. 2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선언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부·강원도 협의안 수정의견 3항을 보시면 1항과 2항에 따른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변경·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괄위임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특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를 도지사가 완전히 권한을 갖게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항은 ‘글로벌교육도시를 지정한 경우 도교육감은 자치도 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제적으로도 조금 해석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지정 요건이 지금 사실상 도조례로 완전히 넘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65조부터는 삭제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교육특구 대신에 글로벌교육도시로 명칭을 바꾸는 걸로 지금 부처에서 의견을 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교육자유특구가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의 쟁점으로 되어 있어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빠지게 된다면, 여기는 그 특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서 제외한다고 검토를 해 봤거든요. 만약에 법사위에서 빠지고 특별법에서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 특구를 인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부처 협의와 같이 명칭만 변경해서 글로벌교육도시로 바꾸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님.

○송재호 위원 교육특구를 글로벌교육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렇게 그냥 포장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방시대 통합법에 교육특구가 반영되면 그것 따라 하면 되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공교육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한 건 좀 특수한 경우고 등록금이 1년에 한 1억까지 드는 학교인데 이렇게 강원도에 해 놓으면 잘못하다 공교육 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 관련

특구법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를 들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들.

○조응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박성민 위원이나 김용환 위원님 동의합니까?

○박성민 위원 예.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이게 이름만 바꾼 거예요, 글로벌교육도시. 이것 전체를 다 들어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나중에 법사위에서 우리가 했던 법안이 정리가 되면 그때 개정을 해도 되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내일 심사 일정이 있지만 지금 특구를 제외하는 걸로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이걸 다 들어내자고, 일단.

여기 보니까 글로벌교육도시라는 것도 추상적이에요. 이것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교육특구를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조응천 위원 오케이, 그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5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3편 제4장에 해당됩니다.

4장은 외국인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으로서 제81조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부터 87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부처 의견은 법무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주었고 수정의견에 삭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 취지는 강원도 양양국 제공항에 대해서 무사증 입국 특례를 인정 중에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주도법을 참조한 걸로 보이는데 제주도와 달리 강원자치도는 육로를 통해 전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156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37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에 삭제 의견을, 138페이지도 역시 삭제 의견, 그다음에 141페이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도 현재는 단기체류

자격에 90일, 장기체류자격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걸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이 5개월로 짧고 연장이 불가해서 특례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법무부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3쪽은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에 제1장 관광 진흥과 제2장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줘서 조문 4개를 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반영하였고요. 2장의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관련해서는 부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관광 진흥과 관련해서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세 또는 환급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 법률에 미반영 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카지노업에 관련된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폐광지역의 성장이 정체 중이므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라는 점, 부정적인 여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45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면 2개 조문 삭제 의견이고요. 146페이지 역시 2개 조문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7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7쪽은 농업 및 식품산업 진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관련 권한이양 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규제완화하고 권한이양을 통해서 농업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간 수요 및 새로운 토지이용 방식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하고 달리 육지로서 강원자치도의 행위가 인근 지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농지 관련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이 인정되는 지역·규제총량·기간에 제한을 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운 안을 제안한 것이 농촌활력촉진지구입니다.

그다음에 안 95조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군에 공급하는 특례가 되겠는데요.

강원자치도는 군 급식 조달방식이 전환됨으로써 접경지역의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이분들의 생존권 보장, 항구적 납품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자율성 제약 및 특정 지자체에 대한 특혜 부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규정을 임의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48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신설을 하는데요, 농촌활력지구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촉진지구로 한정해서 각종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특례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지구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보시면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5·6항에 각각 그 절차가 되어 있고, 6항에서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대해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후단을 신설했는데 후단에 계량화된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면적을 4000만㎡ 이내로 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저녁 늦게 의견을 주었는데요. 4000만㎡ 앞부분에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000만㎡ 이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4항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한정해서 범위를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3조는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부분이 되겠는데요.

3항에서 농지전용허가 권한이양 등의 적용지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40만㎡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수정의견에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특례의 존속기한 등인데요. 환경 관련된 특례에서도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강원도법의 가장 특징적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특례의 존속기한을 두는 것인데요.

1항에 보시면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항에서 농림부장관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평가해서 존속기한의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보받은 도지사는 이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추후평가를 통해서 연장 또는 폐지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95조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구매하여야 한다’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2항도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바꿈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이 설명한 검토의견에 신설한 내용은 신설한 대로, 일부 수정

한 데는 수정한 내용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각종 특례의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지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이 조항을 계속할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용천 위원님.

○조용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로는 사실 큰 효과는 없는데,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지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특례를 바로 두게 되면, 강원도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을 텐데 광범위한 지역이 다 특례를 받게 되는데 이걸 촉진지구로 한정해서 해 놓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이 촉진지구 내에서만 이루어지니까 그 특례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4000만㎡로 해서 총량을 규제해서 정부 측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부분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천 위원 타 법령에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그것은 타 법령에는 없고요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용천 위원 농업진흥지역의 범위를 좀 더 한정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이번에 들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수진 (손을 들)

○소위원장 김교흥 왜 손을 들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수진 농식품부 관련 담당 국장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 그래요? 잠깐 나오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손을 들어.

농지관리국장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수진 예,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수진** 농업진흥지역은 굉장히 집단화된 우량농지입니다. 진흥지역은 굉장히 기계화하고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농지인데 이런 특례를 허용해서 진흥지역이 점점 해제가 돼 버리면 우량농지를 조성한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강원도 특별법의 제정 취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농촌의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위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서 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응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뿐이지만 농식품부에서 아니면 행안부에서 각종 농촌산업과 관련되는 아니면 농촌주거 여건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면 여러 부처에서 관련된 사업을 유치할 때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92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총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000만㎡ 이내로 한정하고 그 기준을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이라든지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한다는 기준을 명시했으면 하는 것이,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이런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계곡 사이의 농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랑 동일 기준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동일 기준으로 동일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농지 관리에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지역의, 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를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기준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부분을 정부 내에서 협의도 했고 강원도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고민을 많이 했네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수진** 예.

○**조응천 위원** 잠깐만요, 정책관님 나오신 김에.

그러니까 활력촉진지구라는 것은 결국은 진흥지역으로 묶인 곳을 해제하기 위해서 활력촉진지구라는 정의를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수진** 활력촉진지구가 꼭 진흥지역만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진흥지역을 시·도지사가 정부랑 협의 안하고 임의로 해제를 하려면 현재는 1ha 이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1ha를 초과하면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례가 반영되면 1ha를 초과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일정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해제를 해라 이런 취지고요. 이게 꼭 100% 진흥지역만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지만 진흥지역이 어쨌든 포함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조응천 위원**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힘든 게 사실 농지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제가 되면, 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해제해 달라’ 이런 우려는 없겠나요?

실제 지역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아니, 여기다 훼손했는데 농지로 묶였다. 이것 좀 해제해주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민통선 푸는 것 다음으로 어렵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민원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수진** 농지라는 게 한 번 해제를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농지감소율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한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구소멸이라든지 지방의 농촌 활력 촉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해서 불가피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어쨌든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 3개월 전까지로 돼 있는데 3개월로 충분합니까?

○**조응천 위원** 몇 조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153쪽 2항.

특례의 존속기한 이거 6개월 정도로 뒤야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제도개선 조치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이면 되겠냐 이거지요. 강원도는 6개월 정도로 얘기하던데.

○김용판 위원 강원도 의견을 반영하지요. 3개월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요? 좀 들어 주는 것도 있어야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수진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수진 저희가 특별법의 운영 성과, 경험을 평가해서 특례를 존속할지 아니면 보완을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6개월로 규정을 하면 사실상 2년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3개월로 규정을 하면 조금 더 저희가 시행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3개월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래요? 그러면 3개월로 합시다.

○조응천 위원 위원장님, 지금 관계부처 어디가 나왔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김교흥 관계부처는 오늘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응천 위원 환경부 아까 안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소위원장 김교흥 환경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3개월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6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4편제3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정이 필요하신 부분 그리고 수정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의 조성 등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성 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만 개별 조항 중에서 98조의 부분에 있어서

는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출입금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법을 참고해서 가능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9조는 배출부과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원으로 규정할 실익이 적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 100조의 경우에는 환경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조문대비표 보겠습니다.

96조·97조는 개정안과 같고요.

98조에 보시면 3항에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제주도법을 참고해서 3항·4항·5항·6항·7항까지 두었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2항 1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부과금 부분이라서 삭제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16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3쪽입니다.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적용 특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주도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제주도와 달리 육지로 강원자치도가 있고 인근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환경부는 국가적 영향이 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일부 이양하되 이양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례 도입 시 적용례를 두는 것은 부칙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101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은 국가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의견이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이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각호로 명확히 규정을 해서요 1호와 2호에 한정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2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맞추어 용어 등을 수정하고요 3항을 괄호에 통합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항은 삭제고 4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 삭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역시 협의 예외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제104조(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은 평가 관련 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10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는 조문을 정비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2항·3항·4항이 조문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10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 기준 등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의 107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양에 맞춰서 건강영향 항목 평가 권한을 이양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108조의 경우에는 권한이양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것이 되겠는데요. 000조로 돼 있는 신설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아까 농림부 특례와 유사하게 특례의 존속기한을 똑같은 체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서 연장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관련 제도개선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로 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삭제 또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응천 위원 이의가 엄청 많은데.

○소위원장 김교흥 얘기하세요.

○조응천 위원 여기 지금 환경부 안 나와 있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환경부 없어.

○조응천 위원 이해가 안 되네. 환경부가 자기들 권한 손톱만 한 것도 안 내놓는 그런 부처인데 이렇게 통 크게 내놓으니까 지금 못 나온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특별히 4대 분야, 환경·산림·국방·농림 분야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굉장히……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의 발전 방향하고 맞느냐 이 얘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하는 게 강원도에서 특색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각 부처……

○조응천 위원 특색 갖고 전부 다 훼손하겠다는 건데 이게 발전 방향하고 맞느냐 이겁니다. 환경부가 국토환경 훼손과 파괴에 묵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요 산천지가 있는 강원도의 산지 관련 허가는 산림청이 다 내주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다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이거. 그걸 3년 동안 보고, 막아야 될 부처가 나오지도 않고.

○김용판 위원 강원도를 한번 믿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넘어갑시다.

○조응천 위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소위원장 김교흥 이것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다 보면.

○송재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예, 한 말씀 하세요.

○송재호 위원 정부 부처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이양하지 말아야 될 게 보존 관련된 것, 국경 관련된 것. 예를 들면 항만 권한은 저는 이양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항만이 국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만 권한 그다음에 환경 관련, 이런 것은 사실 중앙부처가 이양하는 데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라는 조응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데.

다만 큰 것은 빼고 작은 걸 가지고 하고 평가

후에 또 하겠는데, 이 지점에서 또 혹시 훌륭한 도지사가 나와서 환경영향평가를 거꾸로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역으로 개발 위주로 갈 거라는 걱정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자치의 정신에 맞게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응천 위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고 안 먹을 거라고 그것 어떻게 장담합니까.

○김용판 위원 그리 다 무시해 버리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인 사업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중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 세세한 것들을 도지사한테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를 위임하는 건데……

○소위원장 김교흥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환경부에 협의 이런 것도 없지요, 이거는? 나중에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런 것도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하는 방법이나 환경영향평가 기관 이것은 도지사한테 위임했더라도 중앙부처 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여기 내용 보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정 고시하니까 그런 큰 기준, 방법은……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원래 기준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기관에서 하게 돼 있다 이거지요, 도지사가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 차관님, 그러면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타 광역단체는 그냥 환경영향평가건 전략평가건 특례가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마 지역 환경청하고 본부에서 하는 그런 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장·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조응천 위원 그러면 보존 가치가 높은 국토에 대해서 강원도는 도지사가 하고 다른 데는 환경

부나 환경청이 해요. 그러면 당장에 이게 형평이 맞냐, 균형이 맞냐는 얘기가 곧장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풀자 그리고 환경부나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법을 개정하자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꼭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산지가 가장 많은 강원도는 도지사가 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우리가 못 하게 하나, 만약에 헌법소원 들어갔다 칩시다. 이게 비례의 원칙에 맞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패소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글썽.

○소위원장 김교흥 패소 안 하지. 특별법이 우선하잖아. 패소는 안 하지.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도에서 뭐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웬만큼 해야지.

○김용판 위원 자꾸 이래 버리면 특별자치도 의미가 있나요?

○조응천 위원 자꾸 이래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본질을 건드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본질이 아니라 세세한 것들은 위임을 했더라도 큰 것들은 중앙에서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우리도 강원도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송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거예요, 강원도부터.

○김용판 위원 이양하는 게 맞다고 봐요. 환경부만 선이고……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가 나오면 그걸 좀 물으려고 그래요.

○김용판 위원 중앙만 선이고 지방은 악이라는 그것도 맞는 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다른 시도도 점차적으로 가는 거지요. 그게 이제는 지역의……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한테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데……

○소위원장 김교흥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난개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향후 그렇게 갈 거예요. 내 집을 체계 있게 잘 건설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지 내 집을 난개발하면 되겠냐고.

○송재호 위원 오히려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

예요.

○소위원장 김교흥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넘어가시지요.

○송재호 위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응천 위원 뭘 걱정을 안 해?

○소위원장 김교흥 176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6쪽은 임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제4장 임업 진흥을 보시면 10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부터 113조까지 이렇게 특례가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임업 진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산재한 산지의 통일적 관리 필요성과 강원자치도의 자율적 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형평성,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111조 중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부분은 산림청장의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인 점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권한을 이양하는 산림청의 수정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수정 또는 삭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5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85쪽은 제4편 제5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 114조(민군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부분은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안 115조(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 범위에 관한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일괄 완화 시에 군 작전계획 변경 그다음에 재정 소요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가 관할 부대에 보호구역 조정 건의를 통해서 현재 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강원자치도의 해당 절차 진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직접 개정해서 일반적 절차를 마련할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87페이지의 조문대비표 보시면 민군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는 삭제하고요. 115조(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범위에 관한 특례)의 경우에는 강원자치도가 민간인통제선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국방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의 116조는 116조의 내용을 115조에 통합해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전문위원님, 여기서 강원자치도에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원자치도가 민간인통제선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여기서 강원자치도만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여기 도지사는 강원도지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115조 1항에 보시면……

○소위원장 김교흥 군사기지법을 개정 안 해도 되나? 법이 있는데 도지사가 그냥 이걸 마음대로 저기하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게 원래대로 체계적으로 맞게 하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15조에 보시면 특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소위원장 김교흥 좋아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김용판 위원 차관님, 이것 부처 간에 다 합의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부처 협의된 겁니다.

○**김용판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191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91페이지 미활용 군부지 활용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17조(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군용지는 국유재산으로서 그 처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활용 군부지 현황 제공 등 일부 사항은 이행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118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에 있어서는 토지오염정화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서 공익사업 추진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119조는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로서 강원 자치도의 필요 및 수요에 적합한 미활용 군용지 징발 해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회기반사업에도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안 제120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의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동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 121조는 현재 개별 조항에 대해서 추후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라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수정 또는 삭제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02쪽은 6장 경제·산업·해양수산업 등 진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122조(폐광지역 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특례) 관련해서는, 석탄경석은 석탄을 캐다 남은 돌을 의미합니다. 이미 채굴이 종료된 폐광산지역에 산재한 석탄경석은 성질상 광업법에 따른 광물로 보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요. 관계부처의 의

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조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해양수산업은 완화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건을 일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24조의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관련인데요. 이것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난개발 우려 등도 있고 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125조 국립묘지 관련된 부분은, 현재 강원자치도에 건립되는 최초의 국립호국원인 횡성군 국립호국원이 28년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관 시기 등을 고려해서 특례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4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122조의 폐광지역의 경석 관련된 부분은 삭제 의견이고요.

123조의 경우에는 자유무역 지정에 관해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 삭제 또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8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08쪽은 제5편 보칙 그리고 제6편 별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표를 보시면 보칙은 청문부터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까지 그리고 별칙은 감사위원회에 관한 별칙부터 137조(고발 및 통고처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칙에 청문, 감독,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210페이지 별칙 부분입니다.

본칙 규정에 맞춰서 일부 별칙 규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 131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감사위원회의 피감사기관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벌칙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 동의합니다.

○김용판 위원 동의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하나만……

조문대비표에서, 214페이지인데요. 환경 분야에 관한 벌칙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98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과도하다고 해 가지고 개정안이 지금 3년,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같이 법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걸 어떻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것에 대해서 동의·부동의 여부를 계속 협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반대·찬성 의견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3년 이하에 3000만 원 이거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 우리는 3년 이하에 3000만 원 하지요.

김용판 위원님.

○김용판 위원 글썄요,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소위원장 김교흥 이게 원래 5년 이하에 5000만 원이네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다고 해

가지고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송재호 위원 제주도 둘은 좀 특수하니까. 강원도 둘은 누가 반출하겠어요?

○소위원장 김교흥 3년에 3000만 원 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부칙 222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부칙 222쪽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지금 시행일이 출범일인 2023년도 6월 11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종 권한이양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포 후 1년 정도는 있어야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종전 부칙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법률의 부칙의 효과를 지속하려면 해당 부칙을 전부개정법률안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부칙을 마련했구요.

그다음에 본칙에 오전에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를 뒤 가지고 이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걸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나머지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동의 없습니까?

○김용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입장은 어때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판 위원 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입장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 나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 준비기간이 한 1년 정도는, 시행령이라든지 조례, 후속 조치가 많이 필요해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걸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일단 법이 통과된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걸 뭐예요? 노용호·한기호 의원안 검토 이것도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이 부분도……

○소위원장 김교흥 226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26쪽에 보시면 노용호·한기호 의원안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을 보시면 노용호 의원안·한기호 의원안에서 허영 의원안 수정의견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신중검토 해서 삭제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중복되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중복도 많이 있습니다.

227페이지의 노용호 의원안 제10조의4(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규제특례 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법이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28페이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특례 역시 규제특례법 규정이 있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9페이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는 지역개발법 제6조의 취지 고려 시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운영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신중한 검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0조의4도 삭제, 10조의5도 삭제, 10조의6도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10조의7도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사회협약, 해외협력 및 국가공기기업의 협조 부분은 노용호 의원안 23조부터 25조인데요. 이 부분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필요해서 현행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기업 이 부분은 개정안과 같도록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허영 의원안의 심사 과정에서 유사내용을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항이라서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40페이지의 한기호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227페이지 규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례는 중기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사회협약, 해외협력 등과 관련된 조항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반영해서 전부개정안을 의결할 차례이나 이어서 계속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마친 후에 통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법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지방자치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서 시·군 설치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현행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만 있는 것으로 경우의 수를 두고서 시·군·자치구가 없는 상태로 하부행정기관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강원도와 전북이 출범하기 때문에 시·군·자치구가 있는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일을 6월 1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 심사 및 개정안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6월 11일이 소급될 수가 있어서 그런 위험성을 제거한다고 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조문대비표에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법령에서 시·군과 특별자치도를 함께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권한을 갖는 것인

지 시장·군수가 권한을 갖는 것인지 애매할 수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만 관계법령에서 사무처리 또는 권한행사의 주체 외에 시·군·자치구와 특별자치도를 함께 인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요.

5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8항을 보시면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그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군 또는 시장·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와 권한 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하는 경우를 규정해서 이 부분을 포함하도록 8항과 9항을 항을 분리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중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조항 부분인데요.

중전의 강원도를 인용하는 경우에 강원자치도 등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요. 강원도의 관할구역에 존재하는 시·군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세 가지 조항 모두 전문위원 수정 또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동의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예.

○소위원장 김교흥 다음은 의사일정 7항과 8항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현행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현행과 같고요 오영훈 의원안은 이 부분을 법률 대신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구성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시면 먼저 현행은 주민투표 실시 요청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행안부장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런 실시 요청 없이 도지사가 도의회 등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임방식 변경 시 제주자치도의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제주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참고로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하려는 내용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차 부분에 있어서 기관구성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를 기관구성 형태 변경의 필요적 절차로 규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설치 허용 및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안과 오영훈 의원안은 원칙적으로는 미설치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인 시·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광역지자체인 제주자치도는 기초지자체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 분산, 참정권 확대 및 주민자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단층제 모델 도입의 취지, 단층제를 전제로 한 특례 적용 면,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 위치에 있어서 8조의2를 신설하기보다는 법체계상 10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먼저 2페이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집행기관 구성 변경 주민투표 실시 근거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헌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것은 조직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도 전반적인 취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두 번째, 기관구성 형태도 필요한 경우에 필요적 절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설치 허용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특별자치도 시행할 때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제주자치도 내에 시·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단층제 체제로 각종 특례안이 이미 권한을 부여받아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군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이미 주민투표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님.

○송재호 위원 제주특별자치가 17년이 됐는데 이게 시범적 측면과 실험적 측면을 양쪽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치의 진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은 맞고요.

실험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게 모두가 동의하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건건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것 어떡할 거냐. 지금 4660건을 제주도가 이양받아 왔는데 조문 수가 480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만 건에 1000조 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자치의 진전

을 이런 식으로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그래서 어떤 포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도 즉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구조조정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지난하고도 숙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다, 이 부분의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7개 부처의 업무를 제주도에 이관해줬는데 특행기관의 업무와 인력과 권한만 왔지 그 후에 예산이 따라붙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제주도 내 사회간접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의 속도가 더디게 된 측면, 그래서 특행기관의 이전 문제 이전 사실은 자치정신에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면 특행기관에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는 하나도 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제가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보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게 맞지 않다.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걸 지방정부보고 알아서 하라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쉬하는 이 특행기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 제기.

세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기초자치단체 폐지 문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있는 시·군이 없어짐으로써, 전국 시·군·구 수가 226개다 하면 제주도의 2개는 빼 버리거든요. 그러면 228개인데 모든 각 부처의 공모의 근간이 되는, 공모 자격이 기초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행안부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기초인데 제주도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서귀포시·제주시 행정시를 넣어 달라고 법 개정을 해서 ‘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초가 없음으로써 갖는 소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배분 문제에서의 손해.

그다음에 실제 주민 생활이 엄청나게 불편해요. 행정시가 소위 행정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실제로 예산과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2년짜리 행정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무원도 불편해, 지휘하는 제주도 집행부도 불편해, 도민들도 불편해, 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특별자치에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큰 취지는 공감해서 지금 제주도정이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체계가 어떤 게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의 근거만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앞의 조은희 의원님 안에 폐지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똑 같은 거지요, 실은. 조은희 의원님의 연장선상에 이게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근거만이라도 일단 두자 하는 취지이고 그럴 경우에 폐지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폐지했다가 신설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주민투표를 하는 게 맞고.

또 그 주민투표의 권한은 행안부장관이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다만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해서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실익이 없다, 그냥 행안부장관이 요청해서 하면 될 걸 굳이 법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걸 절차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동의라고 하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해서 소위 주민의, 행안부가 지금 업무보고한 소위 주민 수요 기반에 입각한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그러면 주민투표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이고요.

지금 장관께서 단층제에 대한 특례를 두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말씀하셔야 돼요. 교부세 3%는 종전에 제주도가 일점몇 % 받는 걸 3%를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4개 시·군과 제주도가 합해서 받는 게 3%쯤 됐던 겁니다. 4개 시·군을 폐지했으니 4개 시·군이 받던 교부세를 제주도에 없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한 거지 더 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조직·기구 설치 권한을 더 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된 사무가 많고 감사위원회나 자치경찰단 같은 새로운 조직들이 있으니 당연히 그것에 비례해서 조직·기구의 권한이 좀 늘어난 거지 중앙정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기하면 제주도에 준 걸로 보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가장 원칙 된 것은 특별자치로 인해서 제주도의 이익이 개선은 안 되더라도 특별자치로 인한 불이익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이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오늘 마련해 줌으로써, 제주도가 지금 당장 기초를 설치하자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가 새로운 행정체계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주도가 17년도 이후에 지금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면에서 성과평가도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자율을 줌으로써, 자치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직 측면인데 다른 일반자치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5배 정도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정부하고 같이 한번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행기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 대부분의 특행기관을 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구와 인력은 그래도 그 당시에 대부분 이관을 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일부 특행기관 기능 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보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가의 중요한 기능은 계속 국가가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라든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 특행기관의 그동안의 운영 성과도 충분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기초를 부활하는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단층제로 특별자치도를 시작했지만 강원도는 기존의 계층제를 유지하고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제의 계층구조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돌리는 그런 근거를 지금 추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좀 분석하고 난 뒤에 과연 기초를 부활하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제주도뿐만 아니라 부천시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도 기초자치단체하다가 지금 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특별도로 운영된 지도 상당수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전향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충분히 성과 내지 문제점, 시행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필요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송재호 위원님.

○송재호 위원 어쨌든 제가 예산 규모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주도정이 특별자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이 좋다면 현행대로 가는 거고 필요하다면 기초를 부활하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기관구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관구성을 달리할 경우는 저도 행안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률로서 하는 게 맞지 조례로 위임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 김영배 의원안도 지금 올라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기관구성을 달리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법률로 논의하면 될 것 같고, 기초를 부활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부활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활할 경우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제 말은. 그거는 당연히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의 동의를 얻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투표 실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해서 하는 게 맞다, 절차적 근거가.

예를 들어 도지사가 주민투표도 실시하지 않고 도의회 동의만 받아 가지고 행안부장관이 하는

거는 그건 곤란하다. 또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어떤 경우도 생략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이거를 요청 이런 것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 근거를, 소위 도민 공론화 동의, 도의회의 동의, 행안부장관에 대한 요청, 그다음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주민회의 조사 이런 절차적 근거를 이 법 개정엔 넣자는 겁니다.

조은희 의원안이 마침 올라왔으니 기초자치단체의 기준 설치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고 또 제주도처럼 없앨 경우 어떻게 거냐는 절차적 근거도 마련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 두 안이 사실 같은 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길을 열어 놓자는 거지, 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송재호 위원 지금 여기서 기초 부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주민투표 그거는 전문위원 의견과 저희들 의견을 같이합니다.

○김용판 위원 위원장님,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인데요.

차관님,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 오히려 더 피해 봤다, 제외됐다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강원도 이번에 전면 개정하듯이 제주도도 정부하고 제주도하고 잘 협의해서 제주도 발전을 위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면 개정할 의도는 없습니까?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

○소위원장 김교흥 이제 때가 됐어. 권한은 제대로 안 주고 말은 특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예산도 별로 그렇게 충족 안 시켜 주고 하니까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님, 이거는 길을 열어 놓자는 거지 하자는 게 아니잖아.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시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층제로 가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층제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통과돼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하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나중에 제주도가 다시 기초를 한다는 것은, 지금 굳이 새로운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그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거지요.

○**송재호 위원** 조은희 안으로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걸 안 열어 봐도.

○**송재호 위원** 아니아니,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안은 된 거지.

○**송재호 위원** 된 거고, 설치할 경우 조은희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데 제주도가 기초를 설치할 경우도 도민 공론화와 도의회 동의를 받고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위성곤 의원안은 반대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오영훈 의원안으로 하자는 거잖아.

○**송재호 위원** 오영훈 의원안으로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맞다, 앞으로도.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 놓는 게 차관님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거야.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익이 없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소위원장 김교흥**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차관님 말씀도 이해가 가.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굳이 여기에 근거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건데 그래도 길은 열어 놓자 그런 거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식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의회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현행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쪽 지방자치법에 나열돼 있지는 않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현재 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제주도를 전제로 해서 지방자치법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은희 의원안이, 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시군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신설한 겁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지금 조은희 의원안하고 같이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이해식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제주도도 사실은 이층제로 갈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주민투표 거치는 송재호 위원님 안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수정안대로 하자고.

수정안을 나눠 드려요, 빨리.

○**송재호 위원** 행안부차관님, 김용관 위원님 제시 줘서 이참에 행안부도, 지금 강원도도 하겠다, 전라북도도 하겠다, 다 특별자치 하겠다고 하는데 이 특별자치의 공과에 대해서 한번 뭘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 보지요, 같이.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계기로, 또 앞으로 전북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앞으로 일반자치도와 차별성을 두고 할지를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위원** 그런 기준, 카테고리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행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업무를 무조건 주는 게 좋은 건 아니어서, 물론 보충성의 원칙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제주도는 모든 특행기관이 갔지만 강원도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일부 기관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자치도와 특별자치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지금 의결정족수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송재호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전북특별법도 우리가 하고 강원특별법도 하면서, 조금 있으면 중부내륙발전 지원 특별법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게 행안부에서 힘들지만 뭔가 체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특별도 또는 특별시 이렇게 나가면 어디까지 정부의 권한과 이런 걸 이양하고 지방은 특별도는 어디까지 자유롭게 자치권을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카테고리가 분명히, 중앙부처에서 이 범주를 잡아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선이 오고요.

또 하나는 법은 통과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의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국회의 입법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한번 TF팀을 만들든 해서 특별도 특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꼭 행정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크게 제주특별자치도를 왼쪽에 있다고 그러면 일반자치도를 오른쪽에 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특별자치도는 어느 정도 위치에 뒤야 될 건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자, 이제 의결하지요.

제주도 지방의회 및 이거 위성곤 의원안하고 오영훈 의원안은 수정의견을 한번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설명 좀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자치도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 정비 관련된 8조 같은 경우에는 1항은 현행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위성곤 의원안으로 하고, 2항은 오영훈 의원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에 있는 제주자치도 지방자치단체 시군 설치 허용 관련된 부분은 조 위치를 10조의 2로 가져가고 1항은 10조에 그대로 두고요 2항을 1항으로 해 가지고 오영훈 의원안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큰 이의 없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 교 홍	김 용 판	박 성 민	송 재 호
이 해 식	정 우 택	조 은 희	조 응 천
천 준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 상 조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	관	한	창	섭
자치분권정책관		안	승	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박	수	진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심	상	택
강원도지사		김	진	태